

9.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18일
- 발 의 자 : 김태우 의원, 김재용 의원, 김지만 의원, 류종우 의원,  
박종필 의원, 육정미 의원, 이성오 의원, 하중환 의원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2일
- 상정일자 :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 
제6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12월 16일)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태우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 탈모에 대한 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탈모로 인한 정신적·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청년 탈모 치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- 청년 탈모 치료 지원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-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업무 관련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‘청년’, ‘탈모’ 등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,
- 안 제3조는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4조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대상을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,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5조는 청년 탈모 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중복지원 금지,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8조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9조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업무 관련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#### 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탈모로 인한 정신적·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-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최근 5년간 탈모 진료 인구 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청년 층에 해당하는 2·30대 진료인원이 전체의 40% 이상 차지하고 있어 환경적 요인과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음.
- 탈모는 초기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외관상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감 하락 등으로 청년들에게 중요한 취업, 결혼, 대인관계 등 일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

청년들의 사회이탈로 이어짐에 따라, 청년 탈모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보다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.

- 또한 탈모는 질환 특성상 꾸준히 치료제를 복용해야 함에 따라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에게 부담경감을 위한 탈모 치료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며,
- 특히 이번 조례안은 올해 서울 성동구에서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시도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.
- 본 조례안에서 탈모 치료 지원대상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 청년으로 규정한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병원·약국 등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, 탈모 치료 지원이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탈모진단을 받은 청년이 안내 부족 등으로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음.
- 한편, 탈모 치료 바우처 지원 시 부정사용 등의 경우 환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·점검이 병행되어야 하겠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청년 탈모치료 지원 대상이 병원 진료비와 약물치료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함.		현재로선 약값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, 지원 근거를 우선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. 향후, 지원대상, 지원규모 등 세부 사항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.	

## 5. 토론요지

- 없음.

## 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## 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